

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침(수정) ['22년 이전 가입자]

- '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관련 중도해지 환급금 등 일부 규정을 '22년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(Ⅳ. 시행일 및 경과규정)함에 따라,
 - 연도별로 공제부금 적립주제 및 기업자부담 등이 달라 '23년 지침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지침을 검토·시달

①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

- ① (기업 사유) '22년 이전 기업기여금(기업부담금+기업지원금)은 청년에게 지급*하되,
- 기업부담금(기업자부담)은 중도해지 시 기업의 동의를 거쳐 지급
 - * (중도해지 사유발생시 기준)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시 50%, 12개월 이상 100%
 - 단, 중도해지 사유가 '직장내 성희롱, 괴롭힘'인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적립금 전액(청년부담금+기업기여금+취업지원금)을 청년에게 지급(기업 동의 필요)
 - (3년형)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 지급
 - * 기업기여금 지급기준은 2년형, 3년형 공통 적용, 취업지원금은 '23년 지침에 따라 지급
- ② (청년 사유) 정부지원금(기업지원금, 취업지원금)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*하고, 기업부담금(기업자부담)은 기업에게 반환
- * (중도해지 사유발생시 기준)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시 0%, 12개월 이상 50%

< '22년 이전 가입자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【붙임 참조】 >

구 분	중도해지 사유	해지환급금 수급권자			
		청년부담금	기업기여금		정부지원금
			기업부담금	기업지원금	
기업 사유	기업 사유(폐업 도산 등)	청년	청년	청년	청년
	◦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			청년 또는 정부(청년 공모시)	정부
청년 사유	청년 개인 사유	청년	기업	청년	청년
	◦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			정부	정부
기타	◦ 청년근로자 사망, 업무상 재해	청년	청년	청년	청년

② 월 급여총액 초과 기준(청년의 가입제외 기준)

- 월 급여총액 상한액은 **공제 참여신청 '승인' 시점 기준 적용**

* ('19.1.1.)월 500만원, ('20.1.1.)월 350만원, ('21.9.8.~'23년)월 300만원 초과 시 가입 제외

③ 적용일: '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일('23.2.3.) 이후부터

【붙임】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대상 및 지급비율('22년 이전 가입자)

구분	중도해지 사유	해지환급금 수급권자			
		청년부담금	기업기여금		정부지원금(취업지원금)
			기업부담금	기업지원금(채용유지지원금)	
기업 사유	기업 사유(폐업, 도산 등)	청년(100%)	청년* (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) *기업 동의 시	청년 (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)	청년 (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)
	직장 내 괴롭힘.성희롱	청년(100%)	청년(100%)	청년(100%)	청년(100%)
	부정수급 등 불법행위	청년(100%)	청년* (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) *기업 동의 시	청년 또는 정부* (12개월 미만 50%, 12개월 이상 100%) *청년과 기업이 공모 시	정부
청년 사유	청년 개인 사유	청년(100%)	기업(100%)	청년 (12개월 미만 0%, 12개월 이상 50%)	청년 (12개월 미만 0%, 12개월 이상 50%)
	부정수급 등 불법행위	청년(100%)	기업(100%)	정부	정부
기타	청년근로자 사망, 업무상 재해	청년(100%)	청년(100%)	청년(100%)	청년(100%)

※ 청년과 기업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청년부담금은 청년,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, 기업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정부 환수